

발행일 2026년 1월 21일(수) | 발행인 박성만 | 편집 노동안전보건실 ☎ (02)2670-9555 / metalhoan@gmail.com

반복되는 지게차 사망사고, 대책 없는 금호타이어

말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라!

2025년 9월 26일(금) 15시 10분경 재해자인 하청업체 화물차 운전기사가 뒷문을 개방하여 측면 고정장치에 뒷문을 고정하기 위해 뒷문을 열고 밀고 있던 중, 불량 팔레트를 보관장소로 옮기던 지게차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신고 있던 팔레트가 지게차에서 떨어지면서 화물차 뒷문과 충돌해 뒷문을 열고 있던 운전기사가 그 충격에 밀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6년 1월 14일(수) 20시 13분경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금호타이어 사측이 반복되는 지게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발

생했다. 노동부 또한 특별근로감독 등 금속노조 요구를 무시하며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원청 금호타이어 지게차와 하청업체 화물차가 혼재해 작업하는

공간이었다. 문제는 지게차와 화물차가 혼재해 작업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지게차 이동통로와 보행자 동선이 구분되지 않았다. 또한 유도자조차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화물차가 주차했던 공간도 애초 주차가 금지된 곳이었지만 사측은 이를 방지해 왔다. 금호타

이어는 원청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제3자의 종사

위험성평가 또한 공장 내부로만 한정돼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야외 작업장인 사고 현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재해자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특고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라면 작업중지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사망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정당한가. 죽음 앞에서까지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다.

금속노조 각 지부, 지회에서

- 는 1) 지게차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각종 법적 안전조치 및 접촉 방지 센서 장착 권고)
- 지게차 운행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차량 운행 구간 보행자 통로 설치
 - 지게차 작업시 사고를 예방하
- 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해 작업 2) 생산 부서 외에도 구내 도로, 입출하장, 식당, 공무반, 사내 설비공사 등 외부업체 작업 등 생산 부서 외의 업무까지 위험성평가 실시
- 즉시(1달 이내)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 3) 아차사고 및 산재 발생 시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요구>

- 1) 화물차 대기 장소 및 지게차 이동 동선에 대한 관리와 개선
- 2) 지게차 작업 안전수칙 마련 및 유도자 배치
- 3) 지게차 운전자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전,후방 카메라, 위험감지 센서 등 안전장치 설치
- 4) 지게차 운전자 및 하청업체 화물차량 기사들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5) 팔레트 구조 개선

<노동부에 대한 요구>

- 1) 금호타이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실시
 - 안전보건진단명령(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특별감독
- 2)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
- 3) 모든 지게차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안전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실시
- 4) 위험성평가 범위 확대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및 재해자에게 산안법 적용
- 5) 사고 수습자 및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및 심리회복 지원 보장

현장 사진1



현장 사진2	 <p>주차장 사고 장소</p>
현장 사진3	 <p>도크 주차 대기장소</p>
현장 사진4	 <p>사고장소 도크화물차</p>